

# 서울특별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853
----------	------

2021. 12. 1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 1. 제안경위

- 2021. 10. 15. 전석기 의원 발의 (2021. 10. 20. 회부)

## 2. 제안이유

-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정보는 개별 법령상(건축법, 주택법 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어 통합적인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전국적인 건축·주택정책의 모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택정보의 종합적, 세부적인 취합과 관리가 되지 않아 정책수립이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만의 고유한 건축·주택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건축·주택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등의 책무 및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은 법령상 건축·주택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하고, 건축·주택정보의 수집, 처리 및 관리 등을 통해 적절한 주택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해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함을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 2)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직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나.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 시장은 5년마다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함을 규정함(안 제6조).

### 4.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은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정보는 개별 법령상(건축법, 주택법 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어 건축·주택정보의 종합적, 세부적인 취합과 관리가 되지 않아 서울시만의 고유한 건축·주택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건축·주택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건축·주택 데이터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자료 수집 및 보관 기능 위주로 생산 및 관리되고 있어 정책수립을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으로, 서울시의 경우 전국적인 건축·주택 정책의 모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택정보의 종합적, 세부적인 취합과 관리가 되지 않아 정책수립이 제한되고 있으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주택시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sup>1)</sup>.
-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은 “신뢰도 높은 건축주택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1)맞춤형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 2)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건축주택정책역량 제고, 3)지능형 서울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4)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구조 설계를 설정하였음(붙임-2 참고).
- 시스템의 목표모델로 주택수급 정책 지원 서비스와 건축주택 안전 및 에너지 정보 서비스, 생애주기 기반 데이터 관리, 및 에너지/안전 및 공간정보의 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1) 현행 건축물정보는 생성 이후 갱신이 안 되어 누락 및 오기 항목이 다수며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관리항목은 추가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추가정보는 부재하고, 주택공급 및 정비사업에 대한 주거 공급 및 수요 예측을 위한 데이터와 건축물의 안전관리·에너지 데이터 또한 부재하다고 함.

○ 이에 이번 조례제정은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세 부적으로 취합하며 관리하기 위한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에 따라 시민 밀착형 주택정책을 위한 기초 데이터 제공 및 분석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함.

### 〈조례제정안 주요 내용〉

- ▶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직 임무 (안 제7조)
- ▶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관련 협조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9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국가정보기본법”)과 이에 따른 「제6 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 ①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명확한 공간정보 제공, ② 공간정보의 활용도 극대화 및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표준화 및 정보 호환성 제고, ③ 중복투자의 최소화, ④ 공개 등을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sup>2)3)</sup>를 중

####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 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 ①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 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

요시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 (안 제6조)

- 시장은 5년마다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시스템 개발과 발전에 대한 기본목표에 대한 사항보다 제도·정책·위탁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와 같은 5개년 계획의 취지는 건축·주택정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만 재설정하는 차원이 아닌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매년 타당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과 앞서 검토된 시스템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표준화 및 정보 호환성 제고 방안, 공개 등을 통한 접근성 제고 방안, 기존 공간정보와의 연계를 통한 중복투자의 최소화 방안, 그 외 건축·주택 정보의 활용 및 정책 연계 방안, 시스템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조(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은 법령에 따라 공개 및 이용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 또한,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 매년 시스템의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u>시장은 5년마다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건축·주택정보처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u></li> <li>2. <u>건축·주택정보처리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u></li> <li>3. <u>건축·주택정보처리를 통한 정책수립의 방향</u></li> <li>4. <u>건축·주택정보처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u></li> <li>5. <u>건축·주택정보처리를 위한 전문 기관에의 위탁</u></li> </ol> <p>② 시장은 건축·주택정보처리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p>	<p>제6조(건축·주택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①  <u>시장은 시스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시스템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u></li> <li>2. <u>건축·주택 정보의 활용 및 정책 연계 방안</u></li> <li>3. <u>시스템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u></li> <li>4. <u>시스템의 보급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u></li> <li>5. <u>시스템의 공간정보 접근성 제고와 관한 사항</u></li> <li>6. <u>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u></li> <li>7. <u>그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li> </ol> <p>② 시장은 건축·주택 정보화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 시스템의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p>

**“시스템 운영조직과 임무” (안 제7조)**

- 안 제7조는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조직과 임무를 정하며 건축·주택정보 수집 및 분석, 주택·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분석, 시스템 운영관리, 유지 보수 사업관련을 포함하고 있음.

- 다만, 시스템 추진목표 및 과제에서 진단한 사항인 생애주기 기반

데이터 관리 등을 위해 건축물 및 주택의 공급·멸실량과 공공주택의 건설·공급량 분석 등 명확한 임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음.

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건축 주택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조직과 임무)</p> <p>① 시장은 건축 주택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p> <p>② 전담 조직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건축 주택정보 정보 수집 및 분석</p> <p>2. 주택·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p> <p>3.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분석</p> <p>4. 시스템 운영관리, 유지보수 사업관리</p> <p>5. 그밖에 건축 주택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업무</p>	<p>제7조(시스템 운영의 전담 조직 설치)</p> <p>① 시장은 건축 주택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p> <p>②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1. 건축 주택 정보 수집 및 분석</p> <p>2. 건축물 및 주택의 공급·멸실량 분석</p> <p>3. 공공주택의 건설·공급량 분석</p> <p>4. (제2호와 같음)</p> <p>5. (제3호와 같음)</p> <p>6. (제4호와 같음)</p> <p>7. 그밖에 건축 주택 정보 관리·분석과 관련된 업무</p>

**“정보 행정의 협조와 요청사항 및 관리 위탁사항(안 제8조·제9조)”**

- 안 제8조는 정보 행정의 협조와 요청 사항을 담았는데, 구체적인 상위법이 없는 상태로 타 시스템의 정보를 협조 받아야 하는 상황 이므로, 별표(붙임-3)에 속한 유관 행정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여 협조가 잘 이루어질수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별표의 유관 시스템 목록 중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과 직접 연관 된 시스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붙임-3 참고).
- 안 제9조는 시스템에 대한 관리 위탁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관 부서는 현재 서울시 내 시스템 운영을 위탁하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고, 민간위탁은 단순행정 관리사무일 경우에 가능하므로, 건축·주택 정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정보 행정의 협조와 요청)</p> <p>① 건축 주택정보시스템 운영 조직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 주택정보를 수집, 처리 등을 하는 행정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8조(시스템 구축 운영에의 협조) 제7조제1항의 전담 조직은 제3조의 시스템 구축 운영과 제7조제2항의 건축 주택 정보 관리 분석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해당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9조(건축 주택종합정보시스템 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건축 주택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목의 업무에 대하여 건축 주택정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전문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시장은 시스템의 전문적 운영 및 건축 주택 정책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건축 주택 정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연구기관 교육기관 관련협회)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 **끝으로** 유관기관·부서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복을 피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업데이트 등이 한 업체에만 특화되어 독점운영이 되지 않도록 운영이 용이하게 하고, 서울시의 선제적인 시스템이 타 시·도에도 통용되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 및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신지연
연락처	02-2180-8203
이메일	jiyon000@seoul.go.kr

## 【붙임 1】 관련 규정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조(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은 법령에 따라 공개 및 이용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관리의 기본원칙)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1.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경우
4. 제24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 ①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3조(표준 등의 준수 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

###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 ①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1조(협력체계 구축)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관리기관 상호 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공간정보로 제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1.>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안
  - 2. 공간정보의 구축·관리·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의 제정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및 기술기준의 준수 방안 제안
  - 4. 국제 표준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 5.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관한 연구·개발의 위탁

### 제19조(중복투자의 방지)

- ①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6. 1.>
  - 1.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종류 및 규모
  -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범위 또는 지역
  - 3. 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
  -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및 기간
  - 5.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 6. 사업 시행계획
- ②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
  - 1. 사업의 유형 및 성격
  - 2. 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 3.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 4. 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
  - 5. 법 제28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

##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8>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8, 2019.5.16>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합·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측량업 및 수로사업
  - 나.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 다.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 라.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관리 및 용역업
  - 마.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 사.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5.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민간기관을 말한다.
6.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생략)

제3조(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과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제4조(공간정보사업의 추진)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사업의 추진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2.31>

제5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

-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서울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개정 2015.10.8>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공간정보담당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다. <개정 2015.10.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② 관리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인력 교육실시

(생략)

#### 제9조(공간정보 목록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영 제2조의 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12월 31일 기준으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작성한 공개목록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 제10조(공간정보 표준 준수)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관리,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에 있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표준을 따라야한다.<개정 2015.10.8>

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고시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 제11조(중복투자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

는지 여부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③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8>

1.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종류 및 규모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범위 또는 지역
3. 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및 기간
5.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6. 사업 시행계획

④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1. 사업의 유형 및 성격
2. 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3.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4. 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
5. 법 제28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

제3장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보급·활용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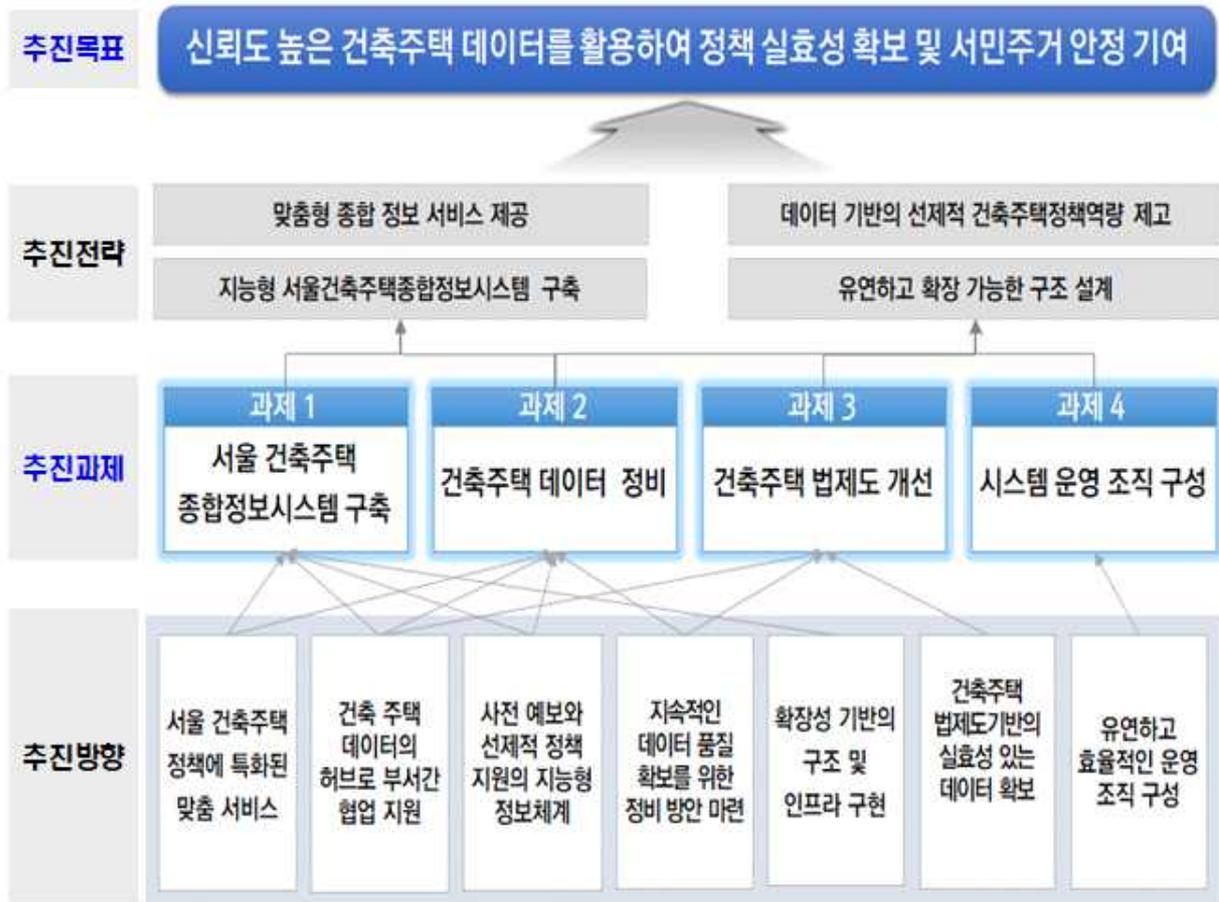
제12조(공간정보의 보급 및 활용 시책)

- ① 시장은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급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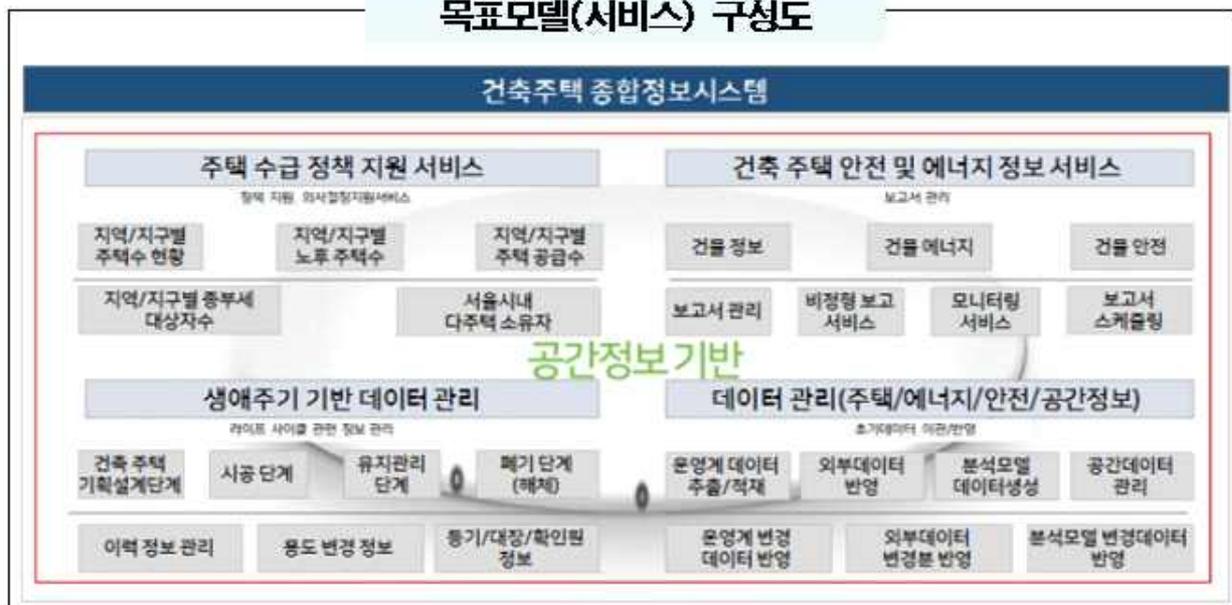
제13조(공간정보 유통)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목록과 자료를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간정보 제공) 시장은 법 제33조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범위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개정 2015.10.8> (생략

【붙임 2】 (21.2) 서울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계획 (주택정책과-3207)



목표모델(서비스) 구성도



### **【붙임 3】 별표1. 건축 주택종합정보와 관련된 시스템**

- 1)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관련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3)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관련된 한국감정원 K-apr정보시스템
- 4)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 관련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에 관련된 기존무허가관리시스템
-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관련된 빈집정보시스템
-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조제10호에 관련된 서울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관련된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 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9조제1항에 관련된 클린업시스템
- 10)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및 운영 규정」 제3조제1호에 관련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 11) 「공공주택 특별법」 제51조제3항에 관련된 서울주거포털
- 12) 「주택법」 제88조에 관련된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
- 13)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서비스에 관련된 공공 wifi정보시스템
-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관련된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 15) 「공공주택 특별법」 제51조제3항에 관련된 SH, LH 인터넷청약시스템
- 16) 「공공주택 특별법」 제51조제1항에 관련된 국토부(전국) My Home 포털
- 17)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에 관련된 주민등록시스템
- 18) 「등기정보시스템운영·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제3조제1호에 관련된 등기정보시스템
- 19)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에 관련된 서울 세무종합시스템
- 20)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련된 서울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
- 21)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제4조제1항에 관련된 서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NSDI)
- 22)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23) 「도로명주소정보체계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관련된 서울 도로명주소시스템
- 2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관련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25)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관련된 항공사진서비스
- 26)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관련된 3차원 공간 정보시스템
- 27)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관련된 공간정보오픈 플랫폼(브이월드)
- 28)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제1호에 관련된 국토정보플랫폼
- 29)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5조에 관련된 네트워크RTK 시스템

- 30)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관련된 서울 공공성지도 시스템
- 31) 「건축물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 32)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관련된 국민안전처 소방민원시스템
- 33)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3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관련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시스템
- 35)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2조에 관련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내부시스템
- 36) 「전자정부법」 제12조제1항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새올행정정보시스템
- 37) 「전기사업법」 제19조제1항에 관련된 한국전기안전공사 내부시스템
- 3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관련된 소방안전지도
- 3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에 관련된 시설물정보종합 관리시스템(FMS)
- 40)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관련된 119행정정보시스템
- 4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의2에 관련된 국민재난안전포털
- 4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3항에 관련된 법인시설관리시스템
- 4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관련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 44)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6조에 재난방송과 관련된 서울안전앱
- 4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관련된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 46)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47)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및 관련 협회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정보
- 4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정보
- 49)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정보
- 50)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관련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기금관리 시스템
- 5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1조에 관련된 서울시 에너지소비총량제 평가 시스템
- 5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관련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시스템
- 53)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에 관련된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 54)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관련된 국가 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
- 55) 「전기사업법」 제19조에 관련된 한전 i-smart